

국내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별 사례분석

○

박현욱, 이봉규, 송지영
한성대학교 정보전산학부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도메인 사용권을 둘러싼 분류를 해소 및 예방하고, 국제적인 도메인네임 분쟁 발생시 국내 기업 등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메인네임 분쟁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회사명 또는 상표명을 사용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회사 또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결을 하는 추세이지만, 국내·외적으로 판결에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네임 분쟁에 관한 법원의 소송 판례를 분석하고, 외국의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 사례와 국내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1. 서 론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도메인네임 분쟁도 국제화되면서 다양해지고 있다. 도메인네임은 사용자가 인터넷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 관리의 기술적 편리성을 위하여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문자체제로 고안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com, .net, .org 등 국제도메인의 2차 이름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최근에는 도메인 소유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도메인을 판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누가 어떤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갖느냐는 간단한 문제도 인터넷의 상업적 성격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권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ford.com이라는 도메인네임도 선착순으로 등록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사이버 공간에서도 포드자동차가 자체상표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메인네임 분쟁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회사명 또는 상표명을 사용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회사 또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결을 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판결에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난해 10월 설립된 후 국제 인터넷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도 어느 선까지를 상표권으로 인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컴퓨터 관련 법률인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만 있고 도메인에 관련된 법률은 부재하고, 다만 다른 회사 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에 대해 한국인터넷센터 등 관련 단체에서 법령을 마련하여 회사 또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도메인네임을 이전할 것을 강

제하는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도메인네임에 관한 소송건은 지적재산권의 침해,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에서 그 관련성을 찾아 인용하고 있는데, 소송을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미진하기 때문에 국회나 법조계에서 관련 법조항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의 보고에 의하면 1999년 12월 WIPO의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 중재조정센터 설립 이후 2000년 10월까지 총 1천428건의 도메인네임 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되었고, 지난 9월까지 769건이 처리되었다. 이 기간 중 우리 나라는 4건을 제소한 반면, 35건을 제소당하였는데 이것은 미국(747건), 영국(119건), 스페인(83건), 캐나다(56건), 호주(37건)에 이어 6번째로 많은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도메인 사용권을 둘러싼 분류를 해소 및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도메인네임 분쟁 발생시 국내 기업 등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적정한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한 '국내 도메인 Naming 체계 구축을 위한 외국사례 조사 및 구축방안 제시'와 ICANN 및 WIPO의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외국의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 사례와 국내 사례를 분석하였고 향후 분쟁 발생시 대처방안을 모색해보았다.

2. 국내·외 도메인네임 분쟁사례 분석

1) 외국의 도메인네임 분쟁 사례

표 1은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의 도메인네임 분쟁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2000년 10월 현재 총 2020건의 도메인네임 분쟁사건 중 960건이 도메인네임 이전판결을 받았고 15건은 도메인네임 말소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540건이 계류 중이며 39건이 판결유보이며, 579건이 미결사건으로 남아있다.

가. 상표권이 보호된 사례

a) adultsrus.com 사례

아동품 회사인 Toys' RUs사가 자사의 이름의 일부를 이용하여 성인용 물품을 판매하는 성인용 사이트인 Adults' RUs(adultsrus.com)를 개설한 사람에게 자사의 상표권을 희석(dilute)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InterNIC사는 그 소송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이 분쟁의 해결을 유예하면서 예비적으로 원고의 침해주장에 무게를 두자 그 도메인네임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법원은 Toys' RUs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dults' Rus의 adultsrus.com라는 도메인네임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를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알릴 것을 부과하였다.

b) cardservice.com 사례

Cardservice International사는 신용카드와 현금인출카드를 처리해 주면서 연간 수십억달러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는 회사로서 1994년 11월 29일 미국특허상표소에 상표권을 등록하

표 1. UDRP에 의한 분쟁처리 현황 통계(2000년 10월 13일 현재)

사건 수	해당도메인명수	진행 상황
540	1141	계류중
0	0	법원 판결을 위한 유보
39	54	기타 판결유보
579	1195	미결 사건 수
960	1554	도메인명 이전
15	18	도메인명 말소
1	4	도메인명 말소/이전
270	346	피고 승소
9	295	부분 승소
1255	2217	결정에 의한 처분 수
6	6	이전화해
0	0	이전 없는 화해
44	51	무조건 화해
0	0	기각
107	167	기각
29	36	각하
186	260	결정 없는 처분
2020	3672	총 사건 수
12	13	재심을 위한 심리종결 수

출처 : <http://www.icann.org/udrp>

였고, McGee사가 소유한 WRM & Associates사도 신용카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다.

1995년 3월 McGee사는 Cardservice International사의 허락없이 NSI(Network Solutions, Inc.)에 cardservice.com을 등록하였고, 그 웹사이트에 “EM S-card Service on the Caprock”으로 된 회사를 통하여 상업용 카드 서비스를 광고하였다. 1995년 5월과 8월에 Cardservice International사는 McGee사에 편지로 모든 Cardservice관련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McGee사는 자사가 Cardservice International사에 cardservice.com이라는 도메인네임을 돌려줄 수 없으며, 인터넷상에서 “Card Service”라는 단어의 사용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McGee사는 “card”와 “service”사이를 띄우고 있기에 상표권 침해가 아니며 cardservice.com은 인터넷이 도메인네임 사이에 칸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단어로 된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Cardservice International사는 인터넷을 통한 사업을 시작할 때 할 수 없이 cardsv.com이라는 도메인네임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 후 Cardservice International사는 McGee사에 대하여 상표권침해와 보통법(민법)상의 불공정경쟁, misappropriation 그리고 unjust enrichment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Cardservice International사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동의, McGee사에

cardservice.com 이름을 사용하지 말도록 판결하였다. McGee사는 이에 wrm.com이라는 자신의 사이트에 Cardservice International사를 연상시키는 csmall.com을 등록하여 자사의 선전에 활용함으로써 법원은 Cardservice International사의 주장대로 McGee사가 일종의 “guerilla warfare”를 하고 있으며 Cardservice International사의 상표권을 악의적으로 침해하여 약 5만불 이상의 손해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다.(미국 버지니아주 농부법원 판례)

c) playmen.com 사례

Playboy Enterprise사는 1953년 이후로 Playboy잡지를 판매해왔고, Tattilo는 1967년에 이탈리아어로 된 성인용 잡지 Playmen을 발행해왔는데, 1979년에 Chuckeberry Publishing사가 영어판 Playmen을 미국에서 발간하려고 하자 Playboy사가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하여 1981년 4월 1일 승소하였으며, 동년 6월 26일에 미국 내에서 잡지명으로 Playm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 내용에 있어 Playboy지의 상호를 혼동시키는 것은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그 후 Playboy사는 미국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법정분쟁을 통하여 Playmen이라는 상호 사용금지 판결을 이끌어냈으나 이탈리아 법원은 Playboy라는 상호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1996년 1월 22일 Playboy사는 Tattilo가 이탈리아에서 영어로 된 웹사이트(<http://www.playmen.it>)을 개설한 것을 발견하고 1981년 법원판결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하여 15년이나 지속된 법원의 판결이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적용되는 지에 관한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법원은 Playmen이라는 잡지이름과 도메인네임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 측의 상표권이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면서, 도메인네임에 playme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홈페이지의 로고와 상징물로서 playmen을 사용하는 것은 playboy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 또 법원은 피고의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고객들에게 주어졌던 비밀번호와 암호를 해제하고 소비자들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보상을 하며 인터넷사이트에 관한 모든 권리를 돌려줄 것을 명하였다.(미국 뉴욕주 남부법원 판례)

나. 선 취득된 도메인네임이 보호된 사례

a) gateway.com 사례

컴퓨터 네트워킹 컨설팅업을 하고 있는 Clerry는 이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gateway를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여 gateway.com을 NSI에 등록하였다. 그는 1988년 5월에 gateway.com을 그의 전자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 8월에 이 도메인네임을 당시의 인터넷 등록처였던 SRI International에 등록하였다.

Gateway 2000은 이에 대해 자신들이 상표권이 있으므로 도메인네임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여 소송을 하였다. 법원은 Gateway 2000사가 gateway라는 단어에 대한 전속적인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gateway라는 명칭 사용에 대해 모든 사용을 금지할 권리는 없다고 보고 이의제기를 기각하였다.

b) whitehouse.com 사례

Dan Parisi가 등록한 whitehouse.com이라는 음란사이트가 백악관(www.whitehouse.gov) 주소를 연상시키는 이름을 지어 네티즌에게 오도된 방문을 유도하므로 윤리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Parisi는 처음에 백악관을 조롱하는 순수한 회화와 논평(parody and commentary)사이트를 지향했으나 유료 음란사이트로 바꾸었다.

백악관은 상업적으로 사용된 “이미지들과 어휘들이 백악관, 대통령, 그리고 그의 가족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백악관의 오랜 정책에 위반된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인터넷이용자들 사이에 논쟁을 유발시켰다.

Parisi는 미국의 판례에 의하면 “The White House”는 상표권이 주어진 이름도 아니고, 클린턴 가족은 공적 인물들이며, S&M Parody를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안 된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그의 사이트는 명백한 주의문(disclaimer)을 만들어 놓았음을 상기시키면서 반론을 개진하였다. 결국 백악관 이미지를 변형한 상표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내세워 백악관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는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상호나 초상이 침해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 당사자간의 합의 사례 (asd.com 사례)

Automated Systems Design사는 Computers for Education사가 만든 홈페이지 유치원 관련 연결사이트인 American School Directory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내의 유치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이전시키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상표로서 사용될 때 asd.com이라는 도메인사용이 서로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는 점에 당사자간에 조정법원(consent judgment)에서 협의로 타결하였다. Computers for Education사는 asd.com이라는 도메인에 대한 권리가 있고, Automated Systems Design, Inc.사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합의를 하였다.

라. 기타 사례 (highsociety.com 사례)

Super Email사는 전자메일을 담당하고 기타 전자망을 이용하여 대화나 정보교환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고객들에게 특색 있는 전자메일주소를 제공하기 위해 다수의 전자메일주소를 미리 확보하였고, 이때 도메인네임도 NSI사에 함께 등록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Diamond Communication사는 Super Email사가 등록한 도메인네임 가운데 highsociety.com에 대하여 자사의 잡지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 highsocietymag.com을 침해하여 연방상표권 반회석화법(Lanham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Super Email사는 highsociety.com라는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내용의 서비스를 개설했으나 Diamond Communication사의 영업(성인용 사이트)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며 따라서 상표권의 침해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상표권침해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highsociety와 같은 보통명사는 어느 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Super Email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메인네임이 상표권의 침해가 아니며 Diamond

Communication사가 도메인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2) 국내 도메인네임 분쟁에 관한 법원의 판결사례

가. 상표권이 보호된 사례

a) microsoft.co.kr 사례

1998년 9월 용산의 소규모 회사가 사업자 등록을 마이크로소프트로 등록을 하면서 도메인네임 신청도 동일한 명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에서는 선점된 도메인네임을 확인하고 난 후 기등록된 기관과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법정소송 준비를 하였다. 결국 소송에 들어가기 전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에 도메인네임을 되돌려 줄 것을 동의하였다.

b) chanel.co.kr 사례

샤넬은 “Chanel”이라는 상표로 화장품, 의류를 비롯하여 악세사리, 핸드백 등 수많은 패션 제품을 디자인하여 생산, 판매하는 프랑스 법인 기업으로 1998년 우리 나라 특허청 발행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에 기재되어 있고, 한 개인이 1998년 12월 30일 “chanel.co.kr”이라는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통신망으로 페르몬 향수, 콘돔 등을 비롯한 각종 성인용품과 란제리 등을 판매하였으며 “프랑스 직수입품”이라 표시하였으므로 상표권 침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샤넬의 상호 등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과 “샤넬인터넷내셔널”이라는 상호나 표시를 승낙 없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용하여 샤넬의 영업과 영업주체의 혼동 행위를 가져왔지만 소송 제기 후 “프랑스 직수입품”표시를 삭제하고 “다임 코리아”로 상호를 바꾼 것을 인정하여 도메인네임은 말소하되 소송비용 부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지방법원 제12 민사부 판례)

나. 선취득된 도메인네임이 보호된 사례 (freetel.co.kr 사례)

1997년 1월 하우콤에서 도메인 등록을 하여 사용하다가 잠시 중단을 한 사이에 한국통신에서 하우콤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메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변경시켰다. 하우콤에서는 도메인네임의 문제를 발생시킨 한국통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자들을 이용해서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하게 하였다. 한국통신에서는 freetel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신청절차상의 잘못과 함께 하우콤에서 이미 상표등록을 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결국 한국통신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네임서버를 삭제하였으며 하우콤에서 네임서버 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기타 사례

a) knk.co.kr 사례

한국데이터정보와 KNK 텔레콤은 관련 협력회사로서 함께 웹호스팅 업무를 시작하면서 도메인네임을 knk.co.kr을 사용하였다. 두 기관 사이에 불화로 인해서 각각 분리 독립을 하게 되고, KNK 텔레콤이 웹호스팅 서비스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기관 간의 채무관계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한국데이터정보에서는 도메인을 인계해 주지 않았다.

결국 두 기관 사이에 불화가 더욱 심해져 협의를 하지 못하고 KNK 텔레콤에서 별도의 도메인을 사용하게 되었다.

b) viagra.co.kr 사례

Pfizer Products사는 의약품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미국 회사로 발기기능장애 치료제인 비아그라(Viagra)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1999년 10월경부터 국내에 판매하도록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았다. 최철동은 1999년 2월 10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viagra.co.kr”을 1998년 9월에 등록되었던 것을 인수하여 인터넷 통신상으로 생츠킴, 킴수 등의 건강식품을 주문자들에게 판매하며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이미 개설된 인터넷 도메인네임 “viagra.com”의 홈페이지 화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비아그라 관련 정보’라는 제목 하에 비아그라 제작사인 Pfizer Products사의 발표 내용을 일부 인용하여 비아그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1999년 3월 말경에 “Pfizer”에게 경고를 받았다. 그 후 ‘비아그라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하였으나 도메인네임을 말소하지 않고 그 홈페이지에서 생츠킴 등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어 Pfizer Products사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다.

법원은 Pfizer Products사가 도메인네임과 홈페이지 사용으로 장기간에 걸쳐 쌓아온 각 상표의 이미지와 명성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것이고, 상표의 고객 흡인력을 희석화시키는 것이어서 부정경쟁행위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아그라의 효능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고 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Pfizer사의 항의를 받아들여 즉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였으며, 인터넷 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생츠킴 등의 건강식품으로 발기기능과 같은 의학적인 효과와는 무관하게 숙취해소를 위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제조원과 브랜드를 홈페이지에 명시한 점, 비아그라는 미국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자에 한하여 약국에서만 구입하게 되어 있고,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국의 또는 외국계의 제약회사가 생츠킴, 킴수 등이나 건강식품을 판매한다고는 쉽사리 생각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영업주체에 관하여 오인하여 혼동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행위만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여 기각되었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 민사부 판례)

3.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을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 및 대처방안

1) ICANN의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에 관한 정책추진 동향

가. 새로운 인터넷 주소공간의 생성

현재 7개가 운영되고 있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 이하 gTLD : com, org, net, edu, gov, mil, int) 등록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도메인의 생성을 추진하는 중이며, 현재 DNSO(Domain Name Supporting Organization)의 Name Council에

표 2. DNSO Name Council 워킹그룹 C의 검토 내용

항 목	검토 의견	
새로운 gTLD의 수 및 생성시기	1~5개의 신규 gTLD를 생성한 후 시행결과에 따라 추가하거나 생성일정을 마련하고 일정에 따라 추가 확대	
새로운 gTLD의 종류 및 레지스트리	제1안	가능한 gTLD 문자열 집합을 결정한 후 gTLD를 운영할 레지스트리에서 신청하도록 함
	제2안	ICANN에서 새로운 gTLD 문자열의 구조를 미리 결정해 놓음
	제3안	이미 제안되어 있던 gTLD(shop, firm 등)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gTLD 문자열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제4안	레지스트리 집합을 구성한 후 각 레지스트리에서 개별적으로 gTLD 문자열을 결정
레지스트리의 형태 및 관리하는 gTLD 수	모든 레지스트리 또는 일부 레지스트리를 비영리기관 형태로 운영하고 운영 가능한 gTLD의 범위를 결정	
새로운 gTLD 등록업무의 경쟁도입	모든 gTLD에 경쟁을 도입하거나 일부 gTLD에만 경쟁을 도입	

출처 : www.icann.org/tlds

서 구성한 워킹그룹 C에서 올해 중 초안완료할 목표로 gTLD 신규 생성 안을 마련중이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새로운 Top-Level 도메인네임 생성에 대한 주요방안을 살펴보면, 500개의 새로운 도메인네임을 3년 이내에 생성하자는 의견과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도메인네임과 기능적인 의미를 부여한 도메인네임을 생성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왔다. 한편, 새로운 Top-Level 도메인네임 생성에 대한 논의는 도메인네임 증가에 따른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명상표 범위결정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표 2는 DNSO 워킹그룹 C의 새로운 도메인네임 생성에 관한 검토내용이다.

나. 도메인 등록업무의 경쟁 체제 도입방안

gTLD 등록업무는 미국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미국 내 NSI에서 독점해왔으나 ICANN 설립 이후 등록업무에 경쟁체제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ICANN의 정책에 따라 미국 NSI는 등록업무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SRS)을 개발했으며, 동 시스템 시험을 위해 5개 업체를 선정하여 1999년 4월부터 9월까지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였다. 등록담당기관의 수 또는 기간 제한은 없으며 ICANN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누구나 지정 가능하다. 등록담당기관의 지정기준은 도메인등록, 변경에 필요한 시스템 확보, 등록공유시스템(Shared Register System)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확보, 정보보안시스템 확보,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확보, 보험가입(대략 500,000달러 이상), 유동자산 확보(대략 70,000달러 이상) 등이다.

다. 일반최상위 도메인 분쟁 해결방안

최근 도메인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정부는 1998년 6월에 백서를 통해 WIPO에

표 3. WIPO가 제시한 UDRP 적용에 관한 사항

UDRP 적용대상 (*오른쪽 3조건을 모든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함)	도메인네임이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상표와 동일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정도로 유사한 경우
	도메인 소유자가 해당 도메인네임에 대한 권리 또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도메인을 악의적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된 도메인을 상표소유자 또는 경쟁자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 려는 경우 - 등록상표와 혼동을 일으켜 인터넷 사용자를 유혹함으로써 재정 적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 - 상표 소유자가 등록된 상표를 도메인으로 등록하지 못하게 방해 하려는 경우 - 경쟁자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한 경우
일반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	행정적 분쟁해결절차 적용 후에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
	행정적 분쟁 해결절차는 악의적인 일반 최상위 도메인 등록에만 적용함
	행정적 분쟁해결절차는 ICANN에서 지정한 분쟁해결서비스 제공기 관에서 수행하며 분쟁해결 신청 후 45일 이내에 판결
	판결결과에 따라 도메인 이름의 이전, 등록 취소, 분쟁 비용부과
	행정적 분쟁해결절차 외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중재, 조정 등의 절차를 권고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자 선정 기준	기관의 국제성
	기관에 소속된 결정권자의 능력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 가능성
	온라인 분쟁관리를 위한 시설 보유여부
UDRP에 의한 조치사항	도메인 등록 취소
	도메인 등록 이전
	분쟁 비용 지불책임의 할당

출처 : www.icann.org/udrp

도메인 분쟁 해결절차의 마련을 요청하였고, WIPO는 1999년 4월 ICANN에 Cybersquatting 등 악의적인 도메인 등록에 대해서는 행정적 분쟁 해결절차를 강제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ICANN에서는 DNSO의 검토를 거쳐 최근 일반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분쟁해결절차(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 이하 UDRP)를 일부 수정하여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분쟁 해결정책의 적용 대상인 악의적인 등록의 판단 기준에 선의의 도메인 등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삽입하였다.

라. 유명상표 보호 방안

도메인 관련 분쟁해결 정책의 일환으로 WIPO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Famous and Well Known Mark)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명상표는 등록배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일반 최상위 도메인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이것은 신규로 추가되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만 적용할 예정이다.

유명상표에 대한 판단은 전세계적으로 패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대표자 목록을 구성하고 상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등록을 배제하기로 결정된 상표의 경우 상표권자가 행정적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 상표 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제기할 경우 도메인 등록자는 도메인 등록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마. 지역적 다양성 확보방안

1998년 11월 ICANN 설립시 미국정부와의 양해각서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ICANN의 의사결정 과정에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적 다양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1998년 8월 ICANN 자체적으로 지역적 다양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의견수렴 중이다. 최종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ICANN 이사회는 각 지원기구의 이사, 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임명할 때, 지역적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바. 국가부호 최상위 도메인(country code Top Level Domains, 이하 ccTLD) 관리에 관한 정책

ccTLD의 관리는 인터넷 초창기에 인터넷 표준문서인 RFC1591에 의해 각국의 ccTLD 관리자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최근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되고 도메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메인의 관리주체를 정부 또는 정부에서 위임하는 기관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ICANN도 ccTLD 관리는 정부의 권한 하에 공식적인 규칙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 루트서버 확대방안

현재 DNS 루트서버(Root Server)는 세계적으로 약 13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루트서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루트서버시스템 자문위원회에서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확대방안을 마련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의 루트 서버 현황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도메인네임 분쟁에 관한 국내 동향 및 대처방안

가. 국내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 동향

.kr 도메인네임을 등록하는 한국전산원 산하의 한국인터넷정보센터(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이하 KRNIC)는 OECD 회원국가의 도메인등록소와 같이 분쟁에 대한 처리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KRNIC은 1999년 2월부터 도메인네임 등록원칙

표 4. 루트서버 현황

이름	관리기관	국가	웹주소
A	NSI	미국	www.netsol.com
B	Southern California 대학	미국	www.isi.edu
C	PSINet	미국	www.psi.net
D	Maryland 대학	미국	www.umd.edu
E	NASA	미국	www.nasa.gov
F	Internet Software Consortium	미국	www.isc.org
G	Defense Information Systems	미국	nic.mil
H	Army Research Laboratory	미국	www.arl.mil
I	NORDUNet	스웨덴	www.nordu.net
J	(테스트베드)	미국	-
K	RIPE-NCC	영국	www.ripe.net
L	(테스트베드)	미국	-
M	WIDE	일본	www.wide.ad.jp

출처 : www.icann.org/committees/dns-root/y2k-statement.htm

의 분쟁해결절차를 만들어 시행해오고 있다.

KRNIC은 기관의 신청에 의해 등록·처리된 도메인네임에 대한 상표권, 상호권, 저작권 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 하에 신청자의 도메인네임의 합법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도메인네임의 분쟁은 분쟁신청자와 도메인네임의 이용자간의 쌍방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메인네임 분쟁에 관하여 KRNIC, 도메인신청대행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도메인네임 신청자 또는 이용자에게 있고 법적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관할법에 따르게 된다.

일반최상위도메인(.com 등)은 선접수시 선처리하고 무제한 발급을 하고 있어 분쟁 발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도메인은 상호·상표권 중심으로 도메인네임이 발급되어 다소 분쟁사례가 적다. 또한 상표는 서비스 또는 제품에 따라 이름이 동일할 수 있으나, 도메인네임은 유일하여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일반최상위도메인을 등록하고 있는 NSI는 분쟁에 대한 처리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도메인네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내에서는 한국전산원 산하의 KRNIC에서 중개 또는 알선, 중재 그리고 법적 판결의 절차에 의해 분쟁해결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각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중개 또는 알선 : 분쟁 당사자 쌍방이 의뢰하는 경우나 일방적인 의뢰로 제기 되었으나, 상대방이 중개 자체에 대한 합의를 할 경우 중개인이 개입하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한다.
- ② 중재 : 당사자간의 우의적인 해결이 어렵거나 실패한 경우 당사자간의 중재합의 또는 중재계약에 따라 중재인이라는 제 3자에게 판단을 맡겨 그 중재판정에 복종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현재 중재기관 또는 기구는 개설 준비중이다.

- ③ 법적 판결 : 중개·알선 또는 중재기관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해 당사자가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 당사자간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분쟁해결의 마지막 단계이며 최종적인 절차이다.

분쟁처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는 중개·알선, 중재기관 또는 법적 판결을 통해서 도메인 네임 분쟁 처리가 완료된 후 분쟁 처리 결과를 KRNIC에 통보하면 처리 결과에 따른 다음과 같은 조치를 3일 이내에 취하게 된다.

- ① 중개 또는 알선 : 분쟁 당사자간 대화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 분쟁내용, 처리 결과, 분쟁기관의 대표자 서명이 포함된 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재 : 중재기관이 결정된 후 공지될 예정이다.
- ③ 법적 판결 : 법원을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 방안

ICANN의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 정책추진 동향에 따르면 현재 7개로 한정되어 있는 gTLD로는 도메인네임 분쟁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gTLD의 생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기존의 gTLD나 현재 ICANN에서 추진 중인 새로운 gTLD 모두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등 인터넷 선진국들이 선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gTLD 생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gTLD의 등록비용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며,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등록담당기관의 유치가 필요한 것이다.

도메인네임에 관한 분쟁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한 전통적인 사법제도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분쟁해결제도를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안은 사법제도에 의한 분쟁해결시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분쟁해결의 적시성 및 전문성 제고를 기하며, 일반의 인지도를 높여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관한 분쟁은 국제적 성격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의 분쟁해결절차 및 제도가 국제적 차원의 절차와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구체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제적 분쟁해결절차 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의 분쟁 해결절차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ICANN과 같은 비영리 국제 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본다.

분쟁 해결기구의 설립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방안, KRNIC에 분쟁처리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현재 KRNIC의 경우 분쟁사례 발생시 법원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음)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분쟁해결협의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대한 효과적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분쟁해결기구의 선결과 함께 상담, 조사 중개, 중재 등 다양한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절차도 함께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본 논문은 제1장 서론에서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분쟁이 현격히 증가함에 따라 대처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2장에서는 adultsrus.com, cardservice.com, playmen.com, gateway.com, whitehouse.com, asd.com, highsociety.com 등의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외국 법원의 판결사례와 microsoft.co.kr, chanel.co.kr, freetel.co.kr, knk.co.kr, viagra.co.kr 등의 도메인네임 분쟁의 국내 법원 판결사례를 분석하여 사례별로 분류하였다. 제3장에서는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을 위한 ICANN과 한국전산원 산하의 KRNIC를 중심으로 국내·외 정책동향을 살펴본 후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ICANN이 정한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도메인네임이 이미 다른 기업이 등록한 상표권 및 서비스권과 같거나 혼동을 가져올 만큼 유사할 경우, 등록된 도메인을 이용해 사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준비 단계에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도메인 이름을 팔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등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도메인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법적 권한이 없는 ICANN이 큰 원칙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적인 분쟁에 들어가면 법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판례에 의존할 경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관련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선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 한국전산원 산하의 KRNIC에서 OECD 회원국가의 도메인등록소와 같이 분쟁에 대한 처리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행하고, WIPO의 도메인분쟁해결원칙 수립 등 국제적 동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도메인네임 등록원칙의 분쟁해결절차를 시행하여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 중이나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도메인네임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제3장에서 제시한 방안과 같이 체계적인 해결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정보화센터 연계서비스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도메인네임 프로세스 검토 보고”, 1999. 2
- 권현영,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절차 개선 동향”, 2000. 3
- 이수연, “국내 도메인 Naming 체계 구축을 위한 외국사례 조사 및 구축방안 제시”, 정보통신학술연구과제 99-09, 2000. 3
- 한국전산원, “도메인 이름 분쟁 사례집”, 1998. 4
- WIPO, “인터넷명과 주소 관리 지적 재산권 문제-WIPO 인터넷 도메인네임 프로세스에 관한 중간 보고서” 1998. 12
- <http://globaldomainmarket.com/dispute>
- <http://www.icann.org>
- <http://www.nytimes.com/library>
- <http://www.ljk.com>
- <http://www.jmls.edu>